

「환매조건부매도」 특약

제 1 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이하 "조건부 매도"라 한다) 업무를 영위하는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 간에 조건부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부 매도"란 은행이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장가액"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은행이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 3 조(조건부 매도 대상 증권)

① 조건부 매도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 중 시장성이 있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증권으로 한다.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
2. 보증사채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 가. 무보증사채권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 마.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 7 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② 제 1 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어야 한다.

1.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 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2.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제 4 조(조건부 매도의 성립 등)

① 조건부 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은행에게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은행에게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환매수 가격 등)

- ① 은행의 환매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환매수 가격 = 조건부 매도 가격×(1+약정일수/365×조건부 매도이율)
- ② 조건부 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증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은 제 1 항의 환매수 가격에서 정산한다.
- ③ 제 1 항의 산식 중 조건부 매도 이율은 은행이 정한 이율로 한다.
- ④ 제 1 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7조(이율의 고지)

- ① 은행은 조건부 매도 이율을 고객에게 거래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율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③ 제2항의 이율의 변경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은행이 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이율에는 기한부 거래의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과 약정기일 후에 환매수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약정기일 전의 적용이율)

고객이 약정기일 전에 조건부 매도의 환매수를 신청하는 때에는 은행이 신규 약정시 게시한 약정기일 전 적용이율로 한다.

제 9 조(약정기일 후의 적용이율)

고객이 약정기일 후에 조건부 매도의 환매수를 신청하는 때에는 약정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하고, 약정기일부터 환매수일 전일까지의 이율은 은행이 신규 약정시 게시한 약정기일 후 적용이율로 한다.

제 10 조(매도거래의 통지)

- ① 은행은 고객과 조건부 매도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도거래성립 내용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건부 매도가액
 2. 환매수의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발행인,발행일 및 만기일,표면이율,액면금액 등)
 5.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은행은 매매거래 성립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제 1 호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제 11 조(매도 증권의 보관 등)

- ① 조건부 매도 거래시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증권 대신 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은행에게 조건부 매도 대상 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하고, 은행은 이를 보관·관리한다.
- ② 은행은 제 1 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증권의 이자 등은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은행은 제 1 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매 영업일 마다 고객별로 산정한 동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 가액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은행은 제 1 항에 의하여 고객의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고객별로 산정한 동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은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고객으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다.

제 12 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등)

- ① 은행은 고객에게 조건부 매도한 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 은행은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은행이 제 1 항에 의한 종목교체를 행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거나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은행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③ 은행이 제 11 조 제 4 항에 의하여 증권을 이전하거나 제 1 항에 의하여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 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 매도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조건부 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조건부 매도 증권의 내용을 고객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 ④ 제 3 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제 10 조제 2 항을 준용한다.

제 13 조(은행의 지급불능사유 발생)

① 조건부 매도거래에 있어 은행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은행이 보관·관리하는 증권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환매수 요구에 용하거나 인도를 요구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청산, 해산, 파산, 회생, 채권자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구조조정 또는 유예,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위한 결의, 결정, 합의가 있거나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2.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은행의 자산이나 은행이 보유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그 이전을 명령 받은 경우

5. 기타 위 각호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② 은행이 제 1 항에 의하여 환매수에 용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약정기일 전 환매수신청시 적용하는 이율을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은행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화, 우편, 기타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계좌의 폐쇄)

은행은 고객의 보유잔고가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5 조(사고,변경사항 신고)

①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은행에게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고객이 제 1 항의 신고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고객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영업점 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18 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이 조건부 매도거래 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고객은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